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!
박기열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의 목적은

자치구의 긴급한 재해복구, 공공시설의 신설·보수 등 특별한 자치구의
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교
부하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지역 시
의원에게 알리고 협의토록 하기 위함입니다.

이를 위해시 장은 자치구청장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
와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자치구 출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게
알리고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
며,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
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